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함(안 제124조).
-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3조 등).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다만, 법무부는 안 제124조제1항제4호에서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

넷 사이트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아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와 안 제124조제1항제5호의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에 포함시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¹⁾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관련하여,

제4호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하여는 그 의미가 저작권법 그 밖의 유사 입법례에서 구체화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5호의 “공중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분에 대하여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을 뜻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법무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음.

1)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아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	4. ----- ----- -----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5. ----- 제공하는 목적으로----- ----- 제4호에 따른----- ----- -----

(전문위원 이 은 정)